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1050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왕진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김진아

변 론 종 결 2021. 1. 8.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1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원고는 E에게 10억원을 2005. 10. 5. 용인 F 상가사업에 투자하기로 한다.

○ E은 원고에게 상기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포함한 20억원을 2007. 3. 3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 단, 위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 지급시기는 2007. 3. 30.까지 하되, 용인 F 상가사업 종료시 C의 배당금 지급시 배당금에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나. E은 2014. 12. 18.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G에 대한 E의 주식에 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1436으로 위 투자금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5. 2.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라. C은 2018. 4. 4.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110호)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피고는 2018. 4. 30. 위 공정증서에 기재 C이 H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타채8269).

마. 그 후 위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대금 중 111,121,224원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1,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배당절차에서 2019. 8. 26. 피고가 위 111,121,224원 전액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에 앞서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7. 8.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무렵 위 회사는 해산 간주된 상태로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내지 8,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있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 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던 C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통한 채무부담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이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원고와 E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 합계 20억원을 2007. 3. 30.까지 지급하되, 용인 F 상가사업 종료시 C의 배당금 지급시 배당금에서 즉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일응 2007. 3. 30.까지로 예정하되 투자대상 사업이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제 종료되어 배당금이 발생할 때를 변제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1) 피고가 위 투자대상 사업이 언제 종료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E이 2014. 12. 18. 원고에게 E 소유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보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 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압류명령에 따라 111,121,22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가처분에 의해 피고가 현실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돈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우관제

별지)

목 록

수원지방법원 I 배당절차(출자증권 매각보고) 사건에 관하여 2019. 8. 26. 작성된 배당
표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끝.

1) 만일 2007. 7. 30.이 도래하면 무조건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원금 10억원에 대해 이자를 10억원으로
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이라는 점과 거래 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